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실시 등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91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208991)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용어 수정(안 제45조제1항제2호 신설)	3
가. 검토의견	3
나. 국토교통부 의견	5
2.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안 제48조제1항, 제58조제2항제2호 등)	6
가. 검토의견	8
나. 국토교통부 의견	15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20899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3. 17.
3. 회 부 일 : 2025.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가입)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적으로 수립·운영할 것을 요구.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에서 항공종사자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은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어 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 교육훈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규정(안 제48조제1항)
- 나.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전문교육기관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신설(안 제58조제2항)
-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기량을 유지토록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안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을 의무화(안 제58조제3항 및 제83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용어 수정(안 제45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생략)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u>관제</u> 3. (생략) ② ~ ⑥ (생략)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항공교통관제 업무</u>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우리나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제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전문항공교통관제사¹⁾ 제도를 도입하려는

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26호, 2024.12.27.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은 다음과 같이 자격증명의 종류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신설함.

현행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26호)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u><신설></u>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 -----. <u>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u>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26호, 2024.12.27.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바 있음.

【 국내 항공교통관제사와 국제기준 비교 】

구분	지식	관제경험(실무경험)	관제경험(전문교육)	나이	신체검사	자격증명 한정
국내	요구	3개월 (모의장비 인정)	이수 (한정 취득과정 불포함)	18세	3종 요구	해당 없음
ICAO	요구	3개월 (모의장비 인정 불가)	이수 (한정 취득시까지 필요)	21세	3종 요구	1개 이상 필요

자료 : 국토교통부

해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2조 정의규정에 제5호의2를 신설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라는 용어를 정의하였음.

현행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2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신설></u>	제2조(정의) ----- ---. <u>5의2. “항공교통관제 업무”란 항공기(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교통 질서를 유지하며 촉진하기 위하여 유선·무선 통신 등을 이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u> <u>가. 비행장관제업무: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 및 주위 공역(空域)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u>

현행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26호)
	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나. 접근관제업무: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다. 지역관제업무: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관제구²⁾(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26호, 2024.12.27.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현행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명시된 ‘관제’라는 표현을 용어의 정의가 신설된 ‘항공교통관제 업무’라는 용어로 수정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26호, 24.12.27.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2조제5호의2 항공교통관제 업무 정의에 따른 단순 조문 개정 사항으로 동의함.

2)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2.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안 제48조제1항, 제58조제2항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 -----.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① ~ ③ (생략)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제48조제2항3)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동등한 수준으로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제공 영역, 대상, 내용, <u>절차</u> 등에 필요한	⑤ ----- 제4항 ----- ----- ----- ----- <u>절차</u> , <u>교육훈련</u> 등에 관하여 -----

현행	개정안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생략)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3. ~ 8.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3. ~ 8. (현행과 같음) ③ ----- - 제4항까지의 규정----- ----- 제1항의 ----- ----- -----. ④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과목, 교

가. 검토의견

① 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필수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26호, 2024.12.27.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은 우리나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전문항공교통관제사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보조 등을 수행할 것이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지닌 자가 경험요건 등을 충족한 후 심사를 거쳐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게 될 것임.

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26호, 2024.12.27.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은 다음과 같이 자격증명의 종류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신설함.

현	행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26호)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u><신 설></u>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 -----. <u>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u>

현행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7026호)								
■ 항공안전법 [별표] <u>자격증명별 업무범위</u>(제36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 data-bbox="212 450 777 701"> <tr> <th>자격</th><th>업무 범위</th></tr> <tr> <td>항공교통관제사</td><td>항공교통의 안전·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td></tr> </table>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신설>	자격	업무 범위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의 안전·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	■ 항공안전법 [별표] <u>자격증명별 업무범위</u>(제36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 data-bbox="817 450 1382 750"> <tr> <th>자격</th><th>업무 범위</th></tr> <tr> <td>항공교통관제사</td><td>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제2조제5호의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u>업무의 보조</u> 2. 제2조제5호의2 라목에 따른 업무</td></tr> </table>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자격증명의 한정을 변경·추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한정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u>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u> 1.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u>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춘 사람일 것</u> 2. (생략) 3. 자격증명의 한정업무범위로 정해진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u>근무 경력을 갖추었을 것</u>	자격	업무 범위	항공교통관제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제2조제5호의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u>업무의 보조</u> 2. 제2조제5호의2 라목에 따른 업무
자격	업무 범위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의 안전·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								
자격	업무 범위								
항공교통관제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제2조제5호의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u>업무의 보조</u> 2. 제2조제5호의2 라목에 따른 업무								

한편, 현행법 제48조제1항5)에 따르면 항공종사자⁶⁾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중 조종사(운송용 · 사업용 ·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를 양성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함.

안 제48조제1항은 항공교통관제사(현행법 제35조제7호)와 전문항공교통관제사[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26호, 2024.12.27.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35조제7호의2]를 양성하려는 자도 전문교육기관으로 반드시 지정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관제시설이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나,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로 하여금 지식과 경험을 갖추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그 전문교육과정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5) 「항공안전법」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항공종사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항공교통관제사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국제 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권(Personnel Licensing, 종사자
자격관리) 중 전문교육과정 · 기관 】**

원문	번역
1.2.8 Approved training and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1.2.8.3 Approved training for flight crew and air traffic controllers shall be conducted within an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4.4.1.2 Knowledge The applicant shall have demonstrated a level of knowledge appropriate to the holder of an air traffic controller licence, in at least the following subjects; Air law Air traffic control equipment General knowledge Human performance Meteorology Navigation Operational procedures 4.4.1.3 Experience 4.4.1.3.1 The applicant shall have completed an approved training course and demonstrated the required competence, having accomplished not less than three months of satisfactory service engaged in the actual control of air traffic under the supervision of an air traffic control (ATC) on-the-job training instructor (OJT). The experience requirements specified for air traffic controller ratings in 4.5 may be credited as part of the experience specified in this paragraph.	1.2.8 전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기관 1.2.8.3 운항승무원 및 <u>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u> 4.4.1.2 지식 응시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소지자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해 <u>적절한 지식수준을</u>, 최소한 다음 과목에서 <u>보여주어야 한다.</u> 항공법규 항공교통관제장비 일반지식 인적수행능력 기상 항법 운영절차 4.4.1.3 경험 4.4.1.3.1 응시자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실무경험을 유자격 항공교통관제 직무교육훈련 교관(OJT)의 감독하에 <u>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u>, 요구되는 역량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절에서 설명한 경험은 4.5항의 항공교통관제사의 한정자격 경험요건 일부로서 인정될 수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②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교육훈련 실시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로 하여금 지식과 경험을 갖추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그 전문교육과정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규제당국이 관제와 같은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관제사를 양성하려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당국(국토교통부)과 관제 등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의 주체[주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가 일치함에 따라 규제당국으로서 소속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안 제83조제4항은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준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특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26호, 2024.12.27.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 이수가 요구되는데,

우리나라 관제시설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속이고, 관제사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83조제4항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행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7026호)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u><신 설></u>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자격증명의 한정을 변경·추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한정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u>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u> 1. (생략) 2. 제48조제1항에 따른 <u>전문교육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을 것</u> 3. (생략)

③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마련 의무

한편, 현행법 제58조제2항은 조종사(운송용·사업용·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58조제2항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해서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⁷⁾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이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 항공기 운항에 따른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육훈련 과정에서 실제 항공기가 운항하는 상황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관련

7)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국가에서 항공안전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이에 따라 실시하는 항공안전활동의 전반)에 따라 항공업계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구조, 책임과 의무, 정책 및 절차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함. (출처 : 국토교통부)

8)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은 다음과 같이 전문교육기관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원문	번역
1.2.8 Approved training and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Note 1.— Annex 19 includes <u>safety management provisions for an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that is exposed to safety risks related to aircraft operations during the provision of its services.</u> Further guidance is contained in the Safety Management Manual (SMM) (Doc 9859).	1.2.8 전문교육훈련 및 전문교육기관 주1 - 부속서19에는 <u>서비스 제공 중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안전 위험에 노출되는 전문교육 기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포함</u> 하고 있음. 또한 추가지침은 안전관리 매뉴얼(SMM, DOC9859)에 포함되어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하여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9권(Safety Management, 안전관리) 중 안전관리 의무 】

원문	번역
3.3.2 Safety management system obligations 3.3.2.1 States shall require that the following service providers under their authority <u>implement an SMS:</u> a) <u>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Annex 1</u> that are exposed to safety risks related to aircraft operations during the provision of their services;	3.3.2 안전관리 의무 3.3.2.1 국가는 다음의 업무제공자가 <u>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u>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a) 서비스 제공 중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는 <u>협약 부속서 1에 따른 전문교육기관</u>

자료 : 국토교통부

안 제58조제3항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 제83조제4항에서 전문교육기관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을 감안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전문교육기관 의무 지정 대상을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로 확대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

관제사 교육훈련 체계를 국내에 도입·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인 관제사 교육훈련으로 관제사의 역량강화가 기대됨.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교육과정, 인력, 시설 등) 구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운영하는 관제시설에 대해 전문교육기관 지정이 불가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 관제시설과 동등한 수준으로 교육훈련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함.

한편,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항공안전 관리시스템 마련 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훈련관제사의 인적요인으로 인한 안전장애를 방지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580